

제 601 호

1977.4.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보

차례

◎ 규칙

제 1685 호	서울특별시 경찰행정자문위원회 규칙 폐지 규칙	3
제 1686 호	서울특별시 하천정용규칙 중개정 규칙	3
○ 제 1687 호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 조례시행 규칙 중개정 규칙	4
제 1688 호	서울특별시 광광 유양업에 대한 유용 음식 세 면 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폐지 규칙	5
제 1689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광광객에 대한 유용 음식 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폐지 규칙	5
✓ 제 1690 호	서울특별시 세 마을 공동사업에 따른 세 면 관한 특별 조례시행 규칙 폐지 규칙	6
제 1691 호	서울특별시 규전 등록기 활용 및 징수 교부금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	6
제 1692 호	서울특별시 지정 개방에 수반한 취득세 과세 면 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폐지 규칙	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계	부도지장	공보제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보과	월	공
1508				X	일	감

◎ 고 시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7
제 93 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지적 일부변경승인	7
제 94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8
제 95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행허가	9
제 97 호 광전병 예방주사실시	12
제 9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토지 결정 및 지적승인	12

◎ 공 고

제 6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6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5
제 71 호 내국수출입업허가증정 신공고	23

◎ 예 규

제 343 호 서울특별시 보호시설 입회원 업무취급요령	26
-------------------------------	----

◎ 사 명

규 칙

서울특별시 경찰행정자문위원회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685호

서울특별시 경찰행정자문위원회
규칙 폐지 규칙

서울특별시 경찰행정자문위원회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68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하천점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본문중 · 다음과 같이 · 를 다음과
각호와 같이 · 로 하고 동조 제 1호중
· 시장의 차량으로 · 를 · 시장이 · 로
하여 제 2호 본문 및 동호 나목중 · 현존
하는 건물 · 을 "정당한 현존하는 건물 ·
로 하여 등·호 가목을 삭제한다.

2. 정용등의 목적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
한다.

다. 전나목에 해당되지 않는자로서
2인 이상의 신赖以生存에 결합된 때에
는 각계입찰에 의하여 최고낙찰
(당시 내경액이상) 자로 한다.

제 12조 제 1호중 · 시장에게 제출 ·
을 · 시가에게 신고 · 로 한다.

제 13조중 · 철거하여 · 를 · 철거등에
의거 · 로 한다.

제 17조를 제 18조로 하고 제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 조 (토석 , 사력 채취 요금의 산정 기준 등) 조례 제 2 조 규정에 의한 요금 산정 기준 중 토석 사력 채취의 요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매 물가 조사는 공식력 있는 서울 특별시 내 2개이상의 물가 조사 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2. 요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공 골재는 석산 등에서 배석에 의하여 생산되는 골재 또는 자연 상태인 자갈에 인공을 통하여 그 형태 규격 등을 변화시킨 골재를 말한다.

3. 요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원석은 모래 자갈 등 구성요소별 합유비율을 산정 적용하고 골재의 요소별 구성비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시험기준의 조사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 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가 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87 호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 조례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 병원 수가 조례 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감면) 제 1 항 제 1 호 중 다음, 차목, 카목을 삭제하고 라목, 바목,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시에서 위가한 사회사업단체의 응급환자

바. 각종 전염병 등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전장진단을 요하거나 감염된자

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자

제 6 조 (감면) 제 1 항 제 2 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병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수가전체금액의 3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 10 조 (진료구분)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601 호 시 보 1977.4.1 36-5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
용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용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88 호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용
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
용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유용음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89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용
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용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유용음식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8-6 제 601 호 시

보

1977.4.1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90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금전등록기 활용 및 징수
교부금등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91 호

서울특별시 금전등록기 활용 및 징수
교부금등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금전등록기 활용 및 징수
교부금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붕개량에 수반한 취
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92 호

서울특별시 지붕개량에 수반한 취
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지붕개량에 수반한 취
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
칙을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광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4. 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동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정	종 정	비 고
기정	소로	2		8m	200m	정동 1-42	정동 13-1	
변경	"	"		"	"	"	"	노선폐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색 약)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3 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지적
일부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일부 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 ('77.3.16)의 관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38-8 제 601호 시 보

1977.4.1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인다.		1977.4.2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일부변경조서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차량기지	당십리 520에서 523 일대 군자동 205에서 981 일대 송정동 74에서 205 일대	178,910 ㎡	
변경			184,642 ㎡	증가 208의 1천 부근, 해제 520 부근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94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	--

호 ('77.3.16)에 의한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인다.

1977.4.2

서울특별시장

가.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31-6의 1필지	2,640 ㎡	관악교통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5 호

도시 계획 사업(전기공급설비)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 호 ('76.4.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한 화곡면 전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변전건설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익발산동

150-2 의 8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기공급

설비(여전소) 사업시행증 토공부분에 한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6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변전 건설사무소소장 이석

4.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차수일 : '77.4.3

나. 준공예정일 : '77.7.30

5. 사업시행면적 : 15,329m²(4,637평)

6. 위치 도면 및 계획평면도 : 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면세 : 별첨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패제인 주소, 설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판매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발산동	146번지	전	264평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 주식회사			
	147	"	240"	"	"			
	148	"	622"	"	"			
	149	"	950"	"	"			
	150번지 의 2	"	1,851"	"	"			
	145	매지	141"	"	"			
	150번지 의 1	"	269"	"	"			
	145번지 의 1	전	300"	서울영등포구의발 산동 145번지의 1번지	최하영	서울영등포구의발 산동 199	최선희 이연애	미등기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재지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의와 권리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광계약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발산동	146번지	건	264평	서울중구 남대문 로 2가 5번지	한국전력 주식회사			
	147번지	"	240"	"	"			
	148	"	622"	"	"			
	149	"	950"	"	"			
	150 회 2	"	1851"	"	"			
	145	대지	141"	"	"			
	159 회 1	"	269"	"	"			
	145 회 1	"	300"	서울 영등포구 의발산동 145번지 회 1번지	최하영	서울 영등포구 의발산동 199	최서경 회 1동 111	미 등기

<p>38-12 제 601 호 시 보 1977.4.1</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97 호</p> <p>광진병 예방법시 광진병 예방법시</p> <p>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진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기 동법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이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1977.4.2</p> <p>서울특별시장</p> <p>1. 실시화적 : 광진병예방</p> <p>2. 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p> <p>3. 실시대상가축명과종류 : 개</p> <p>4. 실시기간 : 77.4.15 - 77.5.14</p> <p>5. 기타사항</p> <p>본 기간 중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살처분 한다.</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98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결정 일부 변경, 폐지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4.6</p> <p>서울특별시장</p> <p>○ 도로 일부변경,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	--

제 60 호 시 보 1977.1.36-13

로 선 조 서

구분	동급	유별	번호	목련	연장	기 접	총 접	비 고
기정	소로	3 유		6	250	가락동 64-2	가락동 112-2	
변경	"	"		"	"	"	"	폐 지
신설	"	"		"	285	가락동 63	가락동 133-1	
기정	"	"		10	25	" 112	" 63	
변경	"	"		"	"	" 112	" 63	폐 지
기정	"	"		"	30	" 113-4	" 112-2	
변경	"	"		"	"	"	"	폐 지
기정	"	2 유		8	210	문정동 64	" 58-4	폐 지
변경	"	"		"	"	"	"	폐 지
기정	"	"		"	30	문정동 산 20	문정동 산 20	
변경	"	"		"	"	"	"	폐 지
신설	"	"		"	110	문정동 66	문정동 산 20	
"	"	3 유		6	4	잘현동 433	잘현동 438	가작신설
"	"	2 유		8	100	상계동 387-10	상계동 389-256	
"	"	"		"	10	" 91-29	" 91-29	
"	소로	"		"	124	청량리동 61-308	청량리동 61-48	주택개량과요청 시민동부병원 부 지 내
기정	"	"		"	40	동두동 118-22	동두동 118-2	
변경	"	"		"	"	"	"	폐 지
기정	"	3 유		"	60	사당동 147-92	사당동 147-86	
변경	"	"		"	"	"	"	위치변경 소로재정비
신설	"	"		"	220	행당동 322-19	행당동 324-101	

38-14

제 501 호

시

보

1977.4.1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제 109호(76.7.19)로
고시된 동방생명-대한화재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4.1

서울특별시장

공 랈 개 요

1. 사업장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
문동 75의 22-75의 80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동방생명-대
한화재간 도로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B = 12m
나. L = 120m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7.4.20 -
78.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조사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다음

[전 룰 조 서]

토지 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구	동				주 소	성 명
중	서소문	120-1	세면부탁	30.4	태평로 2가 233-	명승봉
"	"	75-3	"	3	명동 1가 33-64 용후동 193-17	이억영
"	"	75-33	연과조	12.8	경복성인군 지행면 양포리 247	김재만
"	"	75-27	목조와증	4	75	대한생동공 업주식회사
"	"	75-24	"	9	75-24	민재호
						이우경

제 601호

시 보

1977.4.1

38-15

토지 관서

구	토지 소재 등	지번	지목	면적	소 용 자	
					주 소	성 명
중	서소문	120-8	대	15.9	순화동 3-20	박온삼
"	"	120-1	"	34.4	태평로 2가 233-2	명승용
"	"	75-79	"	30.4	75	대한화재 해상보험 Co
"	"	75-80	"	34.5	"	"
"	"	75-3	"	3.9	명동 1가 33-64 193-17	이 억 김재근 대한화재 해상보험 Co
"	"	75-20	"	44.6	75	"
"	"	75-26	"	0.9	대구시 창신동 205	제일모직공업 Co
"	"	75-83	"	12.8	경북 영일군 지행면 양포리 247	대한생동공 업 Co
"	"	75-27	"	4.9	75	민재호
"	"	75-34	"	23.8	"	대한화재해상 보험 Co
"	"	75-24	"	11	75-4	이우경

○ 서울특별시 공고 제 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경성부 고시 제 139호(76.8.26)
로 고시된 회계로-율지로 일구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내에 거속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 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4.1

서울특별시장

38-16 제 601호

서

보

1977.4.1

공 · 람 · 개 · 요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7.4.20 - 78.12.31
1. 사업장위치 : 충무로 1가 - 남대문로 2가		
2. 사업의 종류와명칭 : 퇴계로 - 을지로 입구간 도로확장공사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3. 사업의 규모 : 가. B = 40 미터 나. L = 540 미터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건 · 물 · 조 · 서

구 주	재 동	지 번	구조	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충	충무로 1가	25-29	철근콘 크리트	52.5	삼청동	133-2	오성립
"	"	25-66	"	37.5	25-11		영화홍업 주식회사
"	"	25-26	"	9.12	돈암동	155-1	최지하
"	"	25-67	"	194	25-12		심상우
"	"	25-70	"	112	장충동 1가	121	온사천 서정숙
"	"	25-69	"	162	충무로 3가	360-3	현수역
"	"	25-68	"	47	답십리동	474	한설실업
"	명동 2가	85-3	"	18.3	85-3		배승기
"	"	84-	목조와습	10	홍은동	9-188	김홍열
"	남대문 2가	12-1	철근콘 크리트	62.5	12-1		이정우
"	"	14-1	"	144.25	동숭동	281-10	변군초
"	"	14-4	"	32.2	창천동	72-37	고윤석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소유자	
구	동				주소	성명
중	남대문2가	16-6	철근콘크리트	44.8	16-6	백승기
"	"	17-1	"	317	회현동 1가 100-85	정운옥
"	"	18-1	"	143.5	충무로 2가 65-1	신창근
"	"	19-1	"	185.5	보광동 238-9	문경수
"	"	20-1	목조세멘 과 증	19.43	충무로 3가 3-102	고성환
"	"	20-4	"	14.35	충무로 2가 12-4	김경무
"	"	21-1	연화조 영옥개	32	면동 2가 51-3	에스파이어 제화 Co
"	"	23-1	철근콘 크리트	307.97	23-1	박선양
"	"	23-4	"	57	신성동 98-38	신현국
"	"	25-1	목조세멘 과 증	40	내자동 200	차영남
"	"	25-4	"	41	신당동 394-46	이종승
"	"	25-6	목조 도단증	34.49	25-1	신외군
"	"	26-1	철근콘 크리트	36.56	신당동 52-114	육진호
"	"	27-1	목조세멘 과 증	22	신문로 1가 213-4	박창설외 2인
"	"	28-1	"	35.6	이문동 66-72	김진봉
"	"	28-3	연화조	29.3	남산동 2가 18-5	둔영목
"	"	29-1	"	53.32	29-1	박용대 김
"	"	31-1	철근콘 크리트	17.68		다재설외 1인
"	"	30-	"	61.29	30	장한호
"	"	31-2	"	45.22	동선동 3가 212-2	이내몽
"	"	32-5	"	89.12	연희동 95-34	이윤기현
"	"	33-1	연화조	42.88	회현동 1가 100-128	소효회
"	"	34-1	철근콘 크리트	37.66	33-1	김윤경

38-18 제01호 시 보				1977.4.1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소유자	
구	동			주 소	성명
중	면동 2가	85-7	연와조 0.9	85-3	백승기
"	"	85-2	" 1.8	269-3	공정우
"	"	86-1	" 7.8	회현동 1가 77	고영준
"	"	87-3	" 4.2	이촌동 302-28	차명상
"	"	97-	" 4	회현동 1가 136	이외우
"	"	99-1	" 8.6	101	김영일
"	"	101-1	연와목조 11.2	승인동 57-15	이세문
"	"	103-	연와조 6	원서동 115	박정운
"	"	104-1	" 20.8	충무로 4가 126	박영희
"	"	107-	철근콘크리트 19.2		성업공사
"	"	108-	" 33	원서동 77-1	중화민국
"	"	102-	연와목조 24.3	답십리동 310-1	이근상
"	충무로 1가	21-16	철근콘크리트 236.9		남영경애국
"	남대문 2가	130-3	" 405	130	(체신부)
"	"	140-1	" 136.4	140-1	한일은행
토지조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	동			주 소	성명
중	충무로 1가	25-24	대 1.7	25-25	김기철
"	"	25-25	" 40.8	"	"
"	"	25-29	" 11.1	삼청동 133-2	오성립

토지조사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중	충무로 1가	25-24	대 1.7	25-25	김기철
"	"	25-25	" 40.8	"	"
"	"	25-29	" 11.1	삼청동 133-2	오성립

제691호 시 보 1977.4.1 ~ 3월 1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자	
구	동					주	소
중	충무로 1가	25-30	대	0.8	25-12	심상우	
'	'	25-66	'	7.5	25-11	영화종업	
'	'	25-26	'	23.6	돈암동 155-1	주식회사 최지하	
'	'	25-28	'	0.2	25-29	오성림	
'	'	25-67	'	53.1	25-12	심상우	
'	'	25-70	'	29.6	장충동 1가 121	은사천	
남대문 2가	20-1	'	10		충무로 3가 3-102	서정숙 고성환	
	'	20-3	'	1.6	'	'	
	'	20-4	'	10.4	충무로 2가 12-4	김경무	
	'	21-3	'	27	명동 2가 51-3	에스파이어 제화Co	
	'	23-3	'	58.3	23-1	박선양	
	'	23-4	'	31.7	신설동 98-38	신현국	
	'	25-1	'	27.8	내자동 200	하영남	
	'	25-3	'	2.1	'	'	
	'	25-4	'	27.2	신당동 304-46	이종승	
	충무로 1가	25-71	'	0.7		강건해기	
'	'	25-69	'	29.6	충무로 3가 360-3	현수덕	
'	'	25-68	'	9.5	답십리 474	한명실업	
'	'	25-74	'	0.3	홍은동 198-5	홍영선 뇌인2인	
명동 2가	84	'	18		홍은동 9-188	김홍열	
	'	85-3	'	6.1	85-3	백승기	
	'	85-1	'	2.7	월동 2가 130-2	김운오	
남대문 2가	12-1	'	12.9		12-1	이정근	

38-20 제 601 호

시

1977.4.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자		
구	동					주	소	성명
중	남대문2가	14-1	대	17.4		동승동 201-10		변군초
		16-4	"	4.6		창천동 72-37		고윤석
		16-13	"	2.4		명동 2가 85-3		백남식
		16-6	"	3.8		16-6		백송기
		16-14	"	0.9		"		"
		17-5	"	0.5		회현 1가 100-85		정덕용
		17-1	"	33.3		회현 1가 100-85		정운옥
		18-1	"	21.2		충무로 2가 65-1		신창근
		19-1	"	28		보광동 238-9		문경숙
		123-4	"	19.4		123		미도파
		25-5	"	2.5		신당동 304-246		황이종
		25-6	"	17		25-1		신의균
		25-7	"	1.4		"		"
		26-1	"	16		신당동 52-114		유춘남조
		26-3	"	.1		"		"
		27-1	"	11		신문로 1가 213-4		박성인용
		28-1	"	10.5		이문동 66-72		장2진
		27-3	"	1		회현 1가 100-3		김성2
		27-4	"	11		신문로 1가 213-4		장2성
		27-5	"	1		회현동 1가 100-3		이의박2
		28-3	"	12		남산동 2가 18-5		이의문2영

제 601 호

시

보 1977.4.1 38-2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자	
구	동					주소	성명
중	남대문2가	25-5	폐	12.5		신당동 304-246	이종승
	"	28-6	"	5.2		명륜동 2가 165	김창숙
	"	29-1	"	6.5		29-1	박용대
	"	29-3	"	1		"	김대찬
	"	29-4	"	6.5		29	김기억
	"	29-5	"	1		29	김기인덕
	"	31-1	"	12		"	이제성
	"	30	"	11		30	이인호
	"	31-2	"	20		동선동 3가 212 외 2 연희동 95-34	이례충현
	"	31-5	"	3		"	이윤기
	"	32-5	"	14		회현동 1가 100-128	서표희
	"	32-1	"	10		충무로 4가 126	成萊공사
	"	33-1	"	13		33-1	김문경
	"	33-3	"	2		"	"
	"	34-1	"	7		"	"
	"	34-3	"	2.7		"	"
	명동2가	85-7	"	0.3		85-3	백승기
	"	85-2	"	0.6		269-3	공정옥
	"	86-1	"	1.5		회현 1가 77	고영준
	"	87-3	"	0.8		이촌동 302-28	차명상
	"	95-2	"	0.6		95	한동도서이 체주식회사
	"	95-3	"	0.1		"	"

38-22 제 601호

시

보

1977.4.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자	
구	동					주소	성명
	명동2가	97	대	2.2		회현동1가136	이영일 집
		98	"	1.9		101	이세문
		99-1	"	3.1		"	"
		101-1	"	3.1		송인동57-15	박정운
		103	"	3.2		원서동175	박영희
		104-1	"	10.6		충무로4가126	성업공사
		107	"	8		"	중화민국
		108	"	13.1		원서동77-1	이근상
		102	"	8.1		답십리동310-1	남궁경애
	충무로1가	21-16	"	404		"	국(체신부)
	남대문2가	11-1	"	3.4		10-1	서울신파 은행
		0-3	"	236.9		130	한일은행
		140-1	"	242.2		140-1	한국산업 은행
		140-8	"	41.5		"	"
		135-4	"	105.4		소공동116-1	서울은행 Co

제 601 호

시

보

1977.4.1 38-23

◎ 서울특별시 공고 제 71 호

내국수출입업회가증정신풍교

년도 내국수출입업 회가증 정신
결과를 다음과같이 공고한다.

1977.4.

무역거래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1977

서울특별시장

대상업소

회원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업종
1	영기업사	동·산구이촌동 302의68	전정호	제품판매
2	협우물산	충로구보통 121	하영우	제조
3	협성기설사	화동 124-1	홍영철	설치
4	한국토산품판매(주)	팔관동 126	김영순	판광기념품
5	덕수관광(주)	내자동 201-11	강승래	"
6	영보관광기념품	인사동 36-1	이계순	"
7	동아아케이트(주)	인사동 15	조성갑	"
8	고려토산품판매소	와동동 139	전암철	"
9	동양관광기념품판매소	낙원동 284-6	정현식	"
10	민속의집	운니동 98-78	김현숙	"
11	삼성아케이트	낙원동 284-6	이두남	"
12	금성	관철동 43-12	조희재	"
13	국제관광아케이트	낙원동 284-6	김재학	"
14	한국경북관광	팔관동 132-1	김정박	"
15	(주)남산관광쇼핑센타	안국동 163	이덕봉	"
16	유창토산품상사	낙원동 284-1	최청자	"
17	아리랑관광기념품판매	원서동 242	하동수	"
18	파고다관광토산품	충로구충로 2 가 38-1	박대문	"
19	A.Q 양복점	충구소공동 87	김학수	양장점
20	하비	87	남종우	"

38-24 제 601 호 시

보 1977.4.1

허가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업종
21	한국인삼홍업(주)	중구소공동89	이승설	인삼류
22	아시아기업공사	중림동355	이윤식	전자제품 설
23	유일기업사	장충동1가26-9	조운하	"
24	금강쇼핑센타	충무로4가125-1	송수옹	관광기념품
25	(주)태홍관광월동지점	월동1가42-1	김광선	"
26	태홍관광(주)	명동1가7-2	"	"
27	(주)미도파백화점	남대문2가127	임정규	"
28	동대문관광기념품	신당동340-77	정순영	"
29	동홍백화점	인현동2가134	맹승지	"
30	다보관광기념품	남대문로5가 84-18	이술한	"
31	산다	장충동2가상 5-19	박춘자	"
32	황금	인현동2가192	서숙자	"
33	다라	명동1가1-3	김덕만	"
34	진양관광기념품	충무로4가125-1	위인찬	"
35	자원사	용지로5가19-29	김영연	"
36	유진관광(주)	무교동63	곽유지	"
37	청열	충무로5가52-25	국순정	"
38	동원관광(주)	태평로2가260-1	유자자	"
39	풍전토산품	인현동2가71-1	이정숙	"
40	보석당	소공동87	정대희	귀금속
41	신신산업사	"	진기일	"
42	해비즈보석사	"	장순희	"
43	토파스코너	"	방일근	"

제 601호 시 보 1977.4.1 38-25

허가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업종
44	서 금 당	중구 소공동 87	강 춘 회	귀금속
45	새 보 당	'	이 애 자	'
46	수 정 사	'	직 창 진	'
47	백 암 사	'	조 진 심	'
48	에 뜨 아 르 보 쇠 사	'	이 민 회	'
49	(주) 협 우 교 역	용산구 후암동 27-12	황 기 연	전자제품 및 설
50	(주) 가 니 안	' 한강로 158-36	이 상 식	'
51	(주) 해밀톤관광호텔	' 이태원동 119-25	이 철 수	'
52	삼화 실업 공사	' 한남동 738-17	이 원 규	'
53	(주) 원 용 상 사	' ' 739-6	양 기 현	'
54	대 영 개 발 공 사	' ' 683-116	김 춘 식	가구 및 공예
55	렉 키 크 럭	' 이태원동 126-16	최 홍 락	시설업 소
56	유 엔 홀	' ' 127	강 혜 정	'
57	킹 크 럭	' ' 136	오 윤 열	'
58	푸 래 이 보 이 크 럭	' 한남동 732-24	유 춘 배	'
59	세 븐 크 럭	' 이태원동 136-45	이 동 운	'
60	0 0 7 크 럭	' 한남동 736-11	안 윤 락	'
61	센 이 스 상 사	마포구 성산동 572-274	오 수 정	전자제품
62	서 울 상 사	서대문구 연희동 81-11	장 운 선	전자제품 및 설
63	(주) 미 한 상 사	강남구 신사동 458-2	이 상 철	'
64	김포 공항관광기념품상사	영등포구 과해동 274	주 병 험	관광기념품

38-26 제 601호 시

보 1977.4.1

예 규

서울특별시 보호시설 입퇴원업무
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다.

1977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⑤ 예 규 제 343 호

서울특별시보호시설입퇴원
업무취급요령

76.4.24 예규제 327 호
개정 77.3.25 예규제 343 호

1. 목적

이 규정은 생활보호법(이하 '법'
이라함)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보
호시설(이하 '시설'이라함)의
입퇴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척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가. 양로시설: 법 제3조 제1항

제 1 호 해당자

나. 보호시설 및 재활시설: 법 제
3조 제1항 제4호 해당자

3. 구비서류

제 2 호의 해당자로서 입원하고자
하는자는 보호시설 입원신청서
(서식 제1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구청장경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함)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요 구호자증명(생보자) 1부

4. 수용결정

시장은 시설경원의 범위내에서 수
용결정을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장,
시설 관할구청장 및 시설장에게 수
용 결정서(서식 제2호)를 송부한다.

5. 수용자 명부 작성 비치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결정이
확정되면 시장, 시설관할구청장 및
시설장은 시설별로 시설수용자명부
(서식 제3호)를 작성 비치하고
시설장은 수용자 신상카드(서식
제4호)를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 601 호

시

보

1977.4.1 38-27

6. 시설장은 매월 말일을 현재로 하여 수용자 동태보고서 (서식제 5호) 및 회소보고서 (서식제 6호)를 작성하여 시장 및 시설관할 구청장에게 각 1부씩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시설관할 구청장경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요보호자의 전원	9. 요구호자 증명 발급 동장은 요구호자증명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급해당자가 이어 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후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1년이상 보호하였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면담을하고 의견서 (서식제 7호)를 첨부, 시장에게 전원을 신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8. 강제 퇴원	부 칙 (77.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38-28 제 601 호

시

보

1977.4.1

<서식제 1호>

보 호 시 설 입 원 신 청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 별	
입원사유			
이원희망 서설명			

서울특별시 보호시설 입퇴원 업무 취급요령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7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요구호자증명 1부

제601호

시

보

1977.4.1 38-29

<서식 제2호>

수용결정서

수용시설명			
성명			
본적			
수용당시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동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호주	
입원결정년월일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보호시설 입퇴원 업무취급요령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수용결정함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522

〈서식 제 3 호〉

시 설 수 용 자 명 부

시설령

1

三

1977-04-01

제 691 호

시

보 1977.4.1 38-31

<서식 제 4 호>

수 용 자 신 상 카 드 시 설 명					
수 용 자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추정) (확실)	사 진
	본 척		취적여부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성 품	
	학 력	신체건강여부		특기 및 소질	
외원가입여부 및 단체명			기 타		
보 호 자 자	성 명	본 척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가족수		
	직 업		월 수입		
	학 력		재 산		
종 교		주 택	자가, 차가, 전세, 월세 사역(전경)		
임 소 동	입 소 년 월 일		자 친 . 단 속 . 의 되 .		
	최초보호시설명 및 소재지				
	시설재수용여부 급 경 로				
	기 기 타				
퇴 소 및 전 원 상 황	퇴소 및 전원년월일	퇴소지 및 진원시설	퇴소 및 전원사유	카드정리 소속성명	
비 고					

38-32 제 601 호

시

보 1977.4.1

<서식제 5호>

원수용자동태표

월보 제 63 호 부표		서기 1977년 월 일분					
명칭	사회복지 부 이	사업 종별		설립 주체		설립	
소재지		인가		인가 판서	보전사회부	관리인	
1. 재원자 동태				2. 재원자 연령별		4. 재원자 출생지별	
구 분	총 수	남	여	구 분	총 수	남	여
전월말현재수				총 수			
총 수				총 수			
무연고자				합 북			
전 입				합 남			
기 타				평 북			
총 수				평 남			
연고자지도				황 해			
전 소				경 기			
사 망				서 울			
기 타				강 원			
월 말현재수				충 북			
정수차				충 남			
연령별				전 북			
구 분	월중주령액	주령누계	총 수	전 남			
국 고			경 북				
지 방			경 남				
학 계			제 주				
3. 재원자 교육정도별				5. 시 설 관 계			
구 분	총 수	남	여	불취학			
국 문				국문해득			
한 계				국민교육			
기 타				중 학 졸			
고 교 졸				고교 졸			
대 학 졸				대 학 졸			
사회복지 법 인				수용정원			
				수용실수			
				수용실평수			
				수용소통수			
				수용소총평			

제 601 호

시

보

1977.4.1 38-33

<서식 제 6 호>

퇴 소 보 고 서

수용번호	성 명	생년월일	퇴원일자	퇴원사유

상기와 같이 월중에 퇴원이 있었기 높고
합니다.

1977년 월 일

시설장

인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1524

38-34 제601호
<서식제7호>

시

보

1977.4.1

의 견 서

본 적			
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입소일자	년	월	일
성 별			

호적상가족사항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부양능력

신설장의견

서울특별시 보호시설 입퇴원 업무취급요령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197 년 월 일

시 설 장

⑩

사 령	
◎ 1977. 4. 1	수도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남 병 국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영 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77.2.23 자 서울고등법원 전체 처분취소 확정판결 (사건 76 구 354)에 따라 75.12.29 자 (발령 제 860호) 징계 처분(전체)을 동일자로 취소함.	수도관리사업소 지방행정 주사 신 임 식
운수 3 과 지방행정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3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도봉구보건소 지방행정 서기 남 국 노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에 의거 감봉 1등에 처함.	

38-36 제 601 호

시

보 1977.4.1

◎ 1977.4.7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박정길	민방위과	관리제장	지방행정사무관	보전행정과	위생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옥유영	보전행정과	위생제장	"	증로구	시민봉사실장	"
김구웅	청소2과	업무제장	"	시보동대문구	청소과장	"
이서용	시민과	민원처리제장	"	성동구	사회과장	"
이성준	종로구	"	"	성북구	총무과장	"
윤인영	중구	"	"	서대문구	민방위과장	"
홍기화	성북구	"	"	청소2과	업무제장	"
송두호	서대문구	"	"	관악구	산업과장	"
김동일	공무원교육원	"	"	영등포구	세무2과장	"
김영술	보건연구소	사무과장	"	종로구	위생과장	"
김병우	영등포구	"	"	종로구	세무1과장	"
강신일	동대문구	"	"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한영	종로구	"	"	시정개발담당관		"
강기완	중구	"	"	감사담당관		"
이동시	동대문구	"	"	순찰담당관		"
이동식	통계담당관	통계기준제장	"	인사과		"
이강명	관악구	"	"	새마을지도과		"
임성수	동대문구	"	"	세정과		"
김윤환	중구	"	"	세무조사과		"

제 601호 시 보 1977. 4. 1 38-37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이규상	성동구		지방행정사무관	의약과		지방행정주사
양대웅	관악구		"	조경과		"
김치근	성동구		"	"		"
김진경	비상계획보좌관	동원담당	"	건축지도과		"
김호진	천호출장소		"	주택행정과		"
김동규	영등포구		"	"		"
이일성	강남구		"	관광과		"
차정우	사회과	구호제장	"	하수시설과		"
윤길찬	종로구		"	종로구		"
최춘길	서대문구		"	"		"
김덕수	마포구		"	중구		"
김지국	중구		"	"		"
민강대	성동구		"	성동구		"
윤영노	성북구		"	성북구		"
김근수	성북구		"	"		"
이갑한	동대문구		"	"		"
한의섭	성북구		"	"		"
박종수	도봉구		"	도봉구		"
박충희	종로구		"	서대문구		"
지영창	마포구		"	마포구		"

38-38 제 601 호

시 보

1977.4.1

성명	별명사함			현지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김인식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고원기	마포구		"	영등포구		"
형영우	관악구		"	"		"
이동우	서대문구		"	"		"
김영득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	관악구		"
조규월	관악구		"	"		"
곽문규	사정개발담당관	개발 1 계장	"	강남구		"
강석천	강남구		"	"		"
안은현	청소 1 과	작업관리계장	"	온평출장소		"
한승	은평출장소		"	"		"
박지병	양서출장소		"	양서출장소		"
국규황	종로구		"	공무원교육원		"
김석주	지하철본부		"	지하철본부		"
황병권	종로구		"	"		"
조남성	도시가스사업소	과장과장	"	도시가스사업소		"
한무식	동대문구		"	"		"
민재식	도봉구		"	중구보건소		"
김영찬	중구		"	수도관리사업소		"

서 울 특 별 시 장